

2024년 「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」 사업 예비공고

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「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」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
- (추진근거)
 -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「녹색건축법」) 제27조
 - 「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운영고시”)
- (사업내용)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
- (사업규모) 총 1,275억 (국고보조금 기준)
- (사업기간) 연내 집행 원칙(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)
 - 사업규모,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('26. 12. 31.)까지 이월 가능

2. 지원자격

- “운영고시” 제2조제5호에 따른 “공공건축물”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^{*}하는 기관(이하 “사업대상기관”)
 - *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,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

- 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- 다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 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- 라.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

3. 지원대상

- “공공건축물”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(사용승인일 2014년 1월 1일 이전)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·공립어린이집, 제4호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(이하 “어린이집”)
 -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 센터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 진료소 (이하 “보건소”)
 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(이하 “의료시설”)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(이하 “경로당”)

4. 지원내용

- (지원항목) 에너지공사 항목(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), **부대공사 및 기타항목**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

구 분		기술요소
에 너 지 공 사	건축	내·외부 단열보강, 바닥 단열 및 난방, 고성능 창 및 문
	기계, 전기 등	폐열회수형 환기장치, 고효율 냉·난방장치, 고효율 보일러, 고효율 조명(LED)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,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
	기타	Cool Roof(차열도료), 선도기술(Sola Tree, 소형풍력, ESS, 광덕트 등), 건축가설공사(단열 및 창호 교체/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)
선택공사		조경공사, 일사조절장치, 스마트에어 샤워, 순간온수기, 절수형 기기, 환경성선언 제품(EPD) 마감재(벽지, 천장재, 바닥재)

단,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
* **부대공사, 기타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[참고1] 참조**

- (지원한도)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
 - 사업대상 당 **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(서울, 중앙·공공의 경우 50억)**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
 - **섬 지역* 및 소규모 건축물**(연면적 300㎡ 미만), 시그니처사업**의 경우,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**지원한도 추가지원**(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p.5참조)
 - * 「섬 발전촉진법」 제2조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
 - **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
- (지원방식) 서울특별시, 중앙·공공기관은 지원 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%,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% 지원

5.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

- (신청방법)
 - **희망건축물** : 일반사업 및 시그니처 사업을 구분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(수신처 국토안전관리원, '23. 12. 8. ~ 12. 27)
 - **본 사업*** 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예정
 - * 공사 전 '24년 종합사업지원(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)을 실시한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신청 가능

- (선정절차) 희망건축물 접수 → 사업공고→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시행 → 본 사업 공모 → 사업 신청 → 대상선정 → 보조금 신청 → 보조금 교부 (1차 80%, 2차 20% 분할) → 사업추진



*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 : <https://www.greenremodeling.or.kr>, * 추진일정은 향후 변경 가능

6. 문의사항 및 세부사항 : 가이드라인 참고

- (문의처)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

- 연락처 : ☎ 055-771-4987, 4970

- E-MAIL : greenremodeling@kalis.or.kr

【붙임】

1.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1부. 끝.